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1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5.

발 의 자:김형동·조지연·김위상

김소희 · 김상훈 · 우재준

임이자 • 유용원 • 김미애

안철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치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수치예보 기술의 융합을 통 한 기술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.

우리나라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(2011년~2019년)과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(2020년~2026년)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, 한시적 사업의 특성 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인 상황임.

현행법은 수치예보모델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·운영에 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·개선 및 환경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·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7조의 5 신설).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5(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 설립)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예보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위하여 한국수치예보기술원(이하"기술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③ 기술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.
 -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수치예보 기술 연구
 - 2. 수치예보 기술 활용 · 보급에 관한 연구
 - 3. 수치예보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국제협력
 - 4.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응용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·훈련
 - 5.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⑤ 정부는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

출연할 수 있다.

- 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그 밖의 기술원의 정관,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당시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(이하 "구법인"이라한다)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수치예보기술원(이하 "신법인"이라한다)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신법인이 승계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

- 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-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-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행위로 본다.
- 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 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5(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
	설립)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
	로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상현
	<u>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</u>
	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예
	보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
	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
	국수치예보기술원(이하 "기술
	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	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, 그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
	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	③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.
	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
	업을 수행한다.
	1. 수치예보 기술 연구
	2. 수치예보 기술 활용·보급에
	관한 연구
	3. 수치예보 관련 국제 공동연
	구 및 전문가 교류 등 국제협
	<u>력</u>
	4.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응용

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·훈련

5.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
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
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사업

- ⑤ 정부는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- 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그 밖의 기술원의 정관,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